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62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피 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7. 9. 18. 접수 제950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E1) (이하 ‘E’라 한다)가 소유운영하던 제주시 F 소재 G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이었던 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7. 18.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의 입회금반환청구

1) 원고들은 2005. 5. 3. E가 소유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에 창립회원으로 가입하면서 E에게 입회금 명목으로 각 9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골프회원권을 발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0. 10. 27.경 E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서 정하는 골프회원권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금반환신청을 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자 E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1879호로 입회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9. ‘E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E는 2005. 2. 24. 및 2007. 2. 13.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3) 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2. 25. 및 2007. 2. 13.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2017.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J과 매매대금을 5,78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7. 9. 14.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K를 우선수익자로(우선수익권 금액 150억 원), 피고 C을 수익자로 각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8.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E에 대한 파산선고

E는 2018. 7. 4.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55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8. 9. 7. 파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정한 등록체육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자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4)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E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필수시설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E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입회금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E에 탈회 및

입회금반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E에 대한 일반금전채권자 또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55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채권자에 불과하므로, E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 C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의 범위에는 원고들과 같이 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그 계약을 해지하여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도 포함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승계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에는 계약해지에 따라 E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반환의무도 포함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자들에 대하여 약 751억 원의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약 57억 8,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탁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9478호,

이하 ‘중전 사해행위소송’이라 한다)에서 제출된 서면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2018. 2. 7. 위 소송 제기 당시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 C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10. 18. 대법원 2016다220143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 C이 E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1년이 지난 2020. 3.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해신탁취소의 소의 경우 신탁법에 제척기간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및 법리는 사해신탁 취소의 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2. 7. 중전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 C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당시 피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나 그 소유의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된 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양수 또는 매수대금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포함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57억 8,3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 C이 부담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골프장 회원권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액은 약 751억 원이라는 것인바, 위 입회금반환채무 상당액 약 751억 원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피고 C의 책임재산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인 약 57억 8,300만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즉,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별지]

목 록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1	<삭제처리>	<삭제처리>	채육용지	3,392
2			목장용지	1,107
3			목장용지	572
4			목장용지	688
5			목장용지	1,795
6			목장용지	2,896
7			채육용지	3,246
8			목장용지	28
9			임야	2,668
10			임야	5,566
11			임야	153
12			채육용지	34
13			채육용지	5,036
14			채육용지	3,359
15			채육용지	936
16			채육용지	5,412
17			임야	93
18			임야	2,830
19			임야	4,263
20			임야	276
21			채육용지	3,725
22			목장용지	12
23			채육용지	8,555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24	<삭제처리>	<삭제처리>	채육용지	7,355
25			목장용지	1,697
26			목장용지	325
27			채육용지	1,198
28			목장용지	534
29			채육용지	5,103
30			채육용지	15,871
31			채육용지	1,656
32			채육용지	10,731
33			채육용지	120,041
34			채육용지	159,603
35			채육용지	59,027
36			채육용지	56,280
37			채육용지	372,594
38			채육용지	5,230
39			채육용지	9,775
40			채육용지	4,555
41			채육용지	8,777
42			채육용지	3,987
43			채육용지	7,114
44			채육용지	4,850
45			채육용지	2,148
46			목장용지	763
47			목장용지	2,134
48			임야	1,157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49	<삭제처리>	<삭제처리>	임야	866
50			채육용지	13,110
51			채육용지	975
52			목장용지	864
53			채육용지	1,065
54			목장용지	398
55			채육용지	4,453
56			채육용지	760
57			채육용지	6,879
58			채육용지	7,983
59			채육용지	4,939
60			채육용지	3,174
61			채육용지	9,339
62			임야	5,544
63			임야	473
64			임야	1,702
65			임야	2,129
66			채육용지	4,949
67			채육용지	7,718
68			임야	11,901

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있는

G골프클럽 클럽하우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단층 운동시설

1층 1875.03㎡

지하1층 2095.35㎡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티하우스

121.9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티하우스2

77.9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티하우스3

86.0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전기실

2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360.4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 창고

1060.39㎡

2층 창고 337.3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하1층 가스저장고

27.6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 가스저장고

27.6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층 운동시설

323.1㎡, 끝.

1) 위 회사의 상호는 원래 H 주식회사였는데, 2005. 3. 3. 주식회사 I로, 2018. 4. 9. 주식회사 E로 각각 상호변경되었다.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25.에 2005. 2. 24.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6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7. 2. 13.에 같은 날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3) 위 회사의 상호는 원래 주식회사 L이었는데, 2013. 12. 5. 주식회사 J으로 상호변경되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